

웅지세무대학교	입학사정위원회규정	문서번호	6-3-12(G)-0
		제정일자	19.01.14
		최근개정	-
		주관부서	입학홍보처
		홈페이지공개	공 개

웅지세무대학교 입학홍보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웅지세무대학교 입학사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입학주관부서의 장, 입학관리실장과 전산실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입학주관부서의 장, 부위원장은 입학관리실장으로 한다.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당해 확정된 전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

1. 출신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자료
2.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
3. 대학별고사
4. 면접고사
5. 실기고사
6. 지원자격 관련 자료
7.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4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회는 전원일치로 의결한다.

부 칙 <1판-제정/시행/공포 2019.01.14.>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